



반탁운동가들의 소련유형 사건

【결정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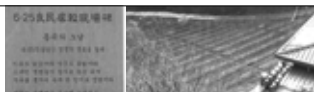
신경득(申京得) 외 18명은 북한지역에서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舊) 소련지역에서 유형생활을 하였으며, 스탈린이 사망한 1953년 직후 복권되어 강제노역에서는 해방되었으나, 구(舊)소련의 서로 다른 지역으로 다시 격리되어 무국적자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였다고 하며, 이에 신청인은 그들의 명예회복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하여 일부(一部)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신경득 외 4인은 1945년 12월, 철원에서 반탁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어, 소련군의 다른 점령지역에서 연행된 반탁운동관련자 14명과 함께 평양 형무소에서 6개월 정도 복역하다가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구(舊)소련의 각기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다고 하였다. 이들 반탁운동 관련자들은 스탈린이 사망한 1953년 직후 복권되어 강제노역에서는 해방되었으나, 구(舊)소련의 서로 다른 지역으로 다시 격리되어 무국적자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였다고 하며, 이에 신청인은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참여하여 구(舊)소련에서 유배생활을 한 신경득 외 18인의 명예회복을 요청하였다.

2. 반탁운동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규명에 관해서는, 진실규명 신청의 대상인 다섯 지역(철원, 평강, 황주, 누천, 연평) 중 두 지역(평강, 황주)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반탁시위 또는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세 지역(철원, 누천, 연평)에서는 반탁운동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3. 진실규명신청의 직접적 관련자들 19명이 반탁운동에 참여했는가의 여부와 반탁운동이 소련유형의 직접적 이유가 되었는지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는 진실규명 신청대상자들 19명 중 1명에 대해서만 반탁 운동과 관련된 1차 사료를 확보하였고, 6명에 대해서는 구(舊)소련 정부가 발행한 공문서를 통해 유형생활을 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그 공문서의 내용이 유형 생활만을 증명할 뿐 유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죄명이 적시되지 않아 본인의 주장 외에는 유형의 이유를 판단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함께 유형간 사람들의 구술 증언 이외에는 반탁 운동과 관련된 소련 유형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4. 해방 후 북한 지역에서 일정규모의 반탁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과 이와 관련하여 소련으로 유형 보내진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인 할 수 있었으나, 현재 단계에서 더 이상의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현재 증거 자료가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건 발생지가 북한지역에 해당하여 실지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본 사건과 관련된 거의 모든 진술을 고령의 생존자 2명에게만 의존해야 한다는 점, 또한 그나마 생존자도 다른 지역출신인 진실규명 대상자들과 유형생활 이전에는 서로 친분관계가 없어 체포경위 등 그들의 구체적 반탁운동행적에 대해 진술할 수 없었다. 이를 감안한다면, 추가조사를 통한 더 이상의 진실규명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사건은 일부(一部)진실 규명으로 판단된다.

【전 문】

【사 건】 나-56 반탁운동가들의 소련유형 사건

【신청인】 신용철

【결정일】 2007. 4. 17.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일부(一部)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신청인 신용철의 주장에 의하면, 해방 후 그의 부친 신경득(申京得)외 18명은 북한지역에서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舊)소련지역에서 유형생활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실규명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경득 외 4인(장수덕, 송병남, 이의찬, 김상준)은 1945년 12월 16일, 철원에서 반탁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12월 26일 경에 체포되어, 신경득은 다른 소련군 점령지역에서 연행된 반탁운동 관련자 14명과 함께 평양 형무소에서 6개월 정도 복역하다가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구(舊)소련의 각 지역으로 배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다고 한다.

이들 반탁운동 관련자들은 스탈린이 사망한 1953년 직후 복권되어 강제노역에서는 해방되었으나, 구(舊)소련의 서로 다른 지역으로 다시 흩어져 무국적자신분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였다고 한다. 또한 생존자 중 일부가 1990년대 초 한·소 수교를 계기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여 유공자 포상을 신청하였으나, 1995년 국가보훈처로부터 현행법이 지정하는 유공자에



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진실규명 신청인 신용철은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참여하여 구(舊)소련에서 유배생활을 한 부친 신경득 외 18인의 명예회복을 요청하였다.

II. 진실규명의 과제

반탁운동가들의 소련유형사건과 관련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직후인 1945년 말에서 1946년 초에 철원을 중심으로 평강, 황주, 누천, 연평에서 반탁운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진실규명 대상자 19인이 철원(신경득, 송병남, 이의찬, 장수덕, 김상준), 평강(전용일, 장희선, 김성길, 백병주, 김영호), 황주(황익걸, 황이각, 김효진), 누천(현태묵, 조덕윤, 양종염), 연평(조상기, 최중갑, 최윤일)에서 각각 반탁운동이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구소련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신청인이 소련 유배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러시아 공문서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III. 진실규명의 목적과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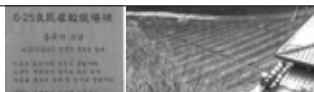
진실규명신청서 검토와 예비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신경득 외 18인이 반탁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정황을 담고 있는 문헌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신청서의 내용 중 일부(반탁운동에 참여했다는 시기와 체포 날짜 등)가 알려진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지만, 신청인이 사건 발생 일시를 잘못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과 본 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지역에 포함된 5곳 중 2곳(평강과 황주)에서 일정규모의 반탁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을 고려하였으며,

본 사건은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되는 바,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 4월 25일 조사개시 의결을 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IV. 조사방법과 경과

1. 조사의 방법

2005년 12월 6일 신청서를 접수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예비조사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2006년 4월 25일 본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예비조사 기간에는 민원의



신빙성 여부와 제출된 첨부자료에 대한 검토 및 참고인들과의 전화면담, 관련된 연구문헌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조사개시가 결정된 후에는 사건과 관련된 추가 자료 확보와 참고인 면담조사 활동에 주력하였다.

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가. 문헌자료조사

본 사건과 관련한 연구 문헌의 검색을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연구회보, 국회도서관 및 각 대학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검색하였으며, 민원인이 타 국가기관에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였다.

또한 신탁통치와 관련된 총 87건의 국내외 참고 문헌을 조사했으며, 그 목록을 작성하였다.¹⁾ 신청서에 대한 검토와 팀내의 토론을 통해 팀원들 간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반탁’을 주제로 한 논문 7편을 분석하고,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분단의 기원’ 등과 같은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외에도 국사편찬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독립기념관과 같은 국내 기관의 소장 자료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나. 전문가면담

본 사건에 대한 핵심에 보다 용이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서울대 국사학과, 경북대 사학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와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요청하였다.

다. 진술청취

조사 대상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실규명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사건 관련 추가 자료를 발굴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신청인 신용철, 진실규명대상자 중 생존자인 김효진과 황익걸²⁾, 신용철 외 다른 유족들 8명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³⁾

또한 진실규명 대상지역에 포함된 다섯 곳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영토에 편입된 철원을 2회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철원 실지 조사는 2006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로

1) 자세한 문헌목록은 「사건관련 문헌자료 목록」참조, 국내문헌 58건(신문 10, 단행본 28, 논문 20)과 해외문헌 29건.(영문자료 13, 단행본·논문 16)

2) 진실규명 대상자 19명중 5인(전용일, 김효진, 황익걸, 현태묵, 장수덕)이 한·소 수교 이후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였으나, 사건조사개시가 결정된 2006년 4월 현재 김효진과 황익걸만 생존해 있다.

3) 신용철 외 사건 관련 유족들 중 다음에서 열거하는 참고인들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 장성운 (장수덕의 조카), 장학량 (장수덕의 장남, 現시애틀거주), 김해영 (김성길의 차남, 現LA거주), 김기영 (김성길의 삼남, 現시애틀거주), 김명숙(김성길의 장녀, 現분당거주), 김병일 (김성길의 부인, 現LA거주).



본 조사기간에는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철원에 거주하고 있는 참고인 6명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철원군청, 경찰서 등 관공서 방문을 통해 관련 기록의 존안 여부를 확인했으며, 철원 지역 향토사학자를 통해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2006년 7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실시된 2차 철원 실지조사 기간에는 진실규명 대상자 19인 중 한 명인 장수덕⁴⁾의 조카 장성운과의 면담을 통해 삼촌의 소련 유형생활에 대한 간접 진술을 청취했으며, 또 반탁운동가들 이야기를 다룬 ‘주권 없는 설움… 생이별 47년’이라는 제목의 1993년 8월 13일자 강원일보 기사의 작성자인 조규병 기자와의 면담을 통해 기사내용의 출처와 근거를 문의하였다.

그 외, 현재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해방 직후 철원에 거주하여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3명의 참고인⁵⁾들도 추가로 섭외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경과

본 사건의 자세한 조사과정과 진행사항은 첨부문서인 ‘조사일지’에 시간 순으로 기록하였다.⁶⁾

V. 조사결과

1. 반탁운동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규명

가. 예비조사 결과에 의한 사건 개요⁷⁾

1945년 12월 말경⁸⁾, 황주(황익걸, 황이각, 김효진), 누천(현태묵, 조덕윤, 양종염), 평강(전용일, 장희선, 김성길, 백병주, 김영호), 연평(조상기, 최중갑, 최윤일), 철원(신경득, 송병남, 이의찬, 장수덕, 김상준)에서 19명이 반탁운동으로 체포되어 해당지역에서 6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했다고 한다.

1946년 7월 경, 이들 19명은 평양 감옥으로 이감되어 6개월 정도 수감되어 있었으며,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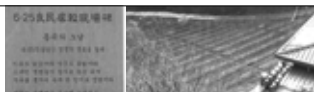
4) 장수덕도 한·소 수교 후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였으나, 1994년 12월 타계하였다.

5) 현재 타 지역에 거주하여 면담을 섭외한 참고인 3명은 다음과 같다. 이○○(당시 철원거주자, 現 성남 거주), 차○○(한국전쟁 중 대한청년회 단장을 역임함, 現 울산 거주), 손○(前서북 청년단원, 해방 후 철원지역 자치위원회의 치안대장으로 활동함, 現 서울 거주).

6) 조사일지.

7)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8)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전문가들은 체포시기가 1월 초 이후에나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신탁통치에 관한 기사를 처음으로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가 1945년 12월 28일이라는 점과 그 후 약 10일 동안의 관련기사들의 검색을 통해 본 조사관도 그 개연성을 확인하였다.



해 12월 16일 경, 이들은 함경북도 홍의역을 거쳐서 28일에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후 5년형을 선고받고 제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유형 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1990년 한소(韓蘇)수교 이후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반탁운동 관련 생존자들과 이들 유가족 중 일부가 1995년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북한지역에서의 반탁 운동가들에 대한 재평가 및 명예회복, 그들에 대한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 등을 신청하였으나, 반탁 운동가는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타 국가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협조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인 신용철에게 부친의 제적등본과 나머지 관련자 18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그들의 한자(漢字)이름과 간단한 신원사항, 그리고 진실규명 대상자 중 생존자(김효진, 황익걸)의 명단 및 거주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건국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의 사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본 법안은 2003년 4월, 前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 법에 해당될 수 있고, 증거자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계로⁹⁾ 개별 입증이 불가능한 등의 이유로 17대 국회에 상정치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고 한다.

나. 전문가 자문 결과¹⁰⁾

1) 본 조사관은 2006년 5월 17일 서울대 국사학과와 전문가를 방문하여 사건 관련 면담을 실시한 결과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통치 사실이 처음 보도된 1945년 12월 28일 이후에는 대중적 성격의 집회가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12월 16일에 대규모 반탁집회가 열렸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1945년 북한지역에서는 찬·반탁과 관련한 문제가 주된 정치적 쟁점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인민위원회를 통한 친일반민족과 반(反)혁명분자들의 처리 문제가 주요한 정치 사안이었고, 좌익지도부가 찬탁으로 결정을 전환했던 분위기상 반탁집회가 대규모로 열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셋째, 한반도 전역에서 반탁시위가 벌어지기는 했으나, 1945년 말까지는 반탁운동의 의지

9) 사건 발생지의 특성상 증거자료가 북한의 공권력 하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0)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 내용 정리.



만 표명되는 수준에 그쳤다.

넷째, 북한에서 반탁운동에 참여한 계층은 주로 ‘친일반민족’, ‘반(反)혁명분자’ 들이라 불리던 계층이 많았으며, 이들은 재산몰수, 공민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두려워했다.

마지막으로, 반탁운동은 평양이나 해주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지방의 경우 반탁운동이 조직화, 대규모화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2) 2006년 5월 30일 실시되었던 경북대 사학과와 전문가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위 ‘정치범(반소/반정치적/반공/반탁 세력)’의 분류에 속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재판은 소련의 내무성에서 담당하였다. 북한지역의 경우는 조만식 계열(민족주의자)의 조선민주당이 일제말 친일 행적으로 인하여 해방 이후에 대부분 월남했으므로, 반탁운동을 주도할 지도세력이 없어 반탁운동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았다.

러시아 자료는 1945년 이후 생산된 자료부터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재 비공개 자료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러시아 자료 중 친일파 숙청 자료 및 소련 유형에 관련된 자료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은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는 없다고 했다. 또한 해당전문가의 경우 반탁운동을 애국적인 성격의 운동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3) 2006년 6월 16일에는 조선대 정치외교학과를 방문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와 면담을 실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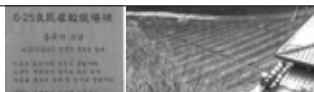
첫째, 반탁의 주체 세력은 당시 학생층, 지방의 유지들, 남쪽연합세력, 자유수호 동맹 등이었다.

둘째, 신청인들이 주장하듯이 1945년 12월 16일 경에 조직적인 성격의 반탁운동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이거나 신청인의 단순한 착각으로 사료된다.

셋째, 해방 직후 철원지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자료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존 자료의 80%이상이 러시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사건과 관련된 19인의 식민지 시대 당시 이력을 검토해 보면 그들은 전형적인 유산 계층이고, 이들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있어서 반혁명세력으로 취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식민지 시기의 친일 협력자나 악덕 지주들도 체포되어 소련 유형에 처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대상자들이 이에 해당되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데 사실상 이를 분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 현지조사 결과

제1차 철원 실지조사는 2006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기간 동안 철원 군청, 철원 문화원, 철원 경찰서, 철원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철원지역의 해방 당시 시대 상황을 알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한국전쟁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용이치 않았고, 대신 당시 철원의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당시 철원지역 거주자 6인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해당기간에 실시되었던 조사와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¹¹⁾

첫째, 철원 군청과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1945년 해방 당시의 문서는 현재 철원 지역 관공서에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해방 당시의 철원은 지금 현재 북(北)철원〈현(現)북한소재〉지역까지를 포함하였는데, 당시 행정구역 상 철원에 속한 지역의 대부분이 현재는 북한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철원은 한국전쟁 후 휴전선을 조정하던 중 재편성된 지역이며, 당시 관련 기록물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소실되거나 북한 안전부(북한의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둘째, 해방 당시 15~20세 정도였던 현재까지도 철원읍을 본적으로 하고 있는 참고인 6인을 섭외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방 직후에는 철원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거나 특별히 반탁운동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¹²⁾

철원지역의 향토사학자도 평강에서는 반탁운동이 있었다고 증언하면서도, 철원지역에는 소련군의 콘트라지가 있어 정치적 집회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반탁운동이 박영태라는 인물이 경인선을 통하여 신탁통치 결의안을 전달한 후인 1946년 1월 1일 오후 1시에 평강에서의 집회를 시작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인이 진술한 1945년 12월 16일, 철원지역의 반탁운동 발생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라. 소결

진실규명신청의 대상인 다섯 지역(철원, 평강, 황주, 누천, 연평) 중 두 지역(평강, 황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반탁시위 또는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문가면담과 문헌 자료를 통하여 일부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세 지역(철원, 누천, 연평)에서는 반탁운동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11) 자세한 내용은 제1차 철원실지조사: 참고인 및 향토사학자 면담.

12) 그들은 사견(私見)을 전제로 당시 소련군에 대한 공포 분위기 때문에 조직적인 집회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2. 진실규명신청의 직접적 관련자들 19명이 반탁운동에 참여했는가의 여부와 반탁운동이 소련유형의 직접적 이유가 되었는지의 사실 여부에 대한 규명

가. 신청인과 사건 관련자 면담 조사결과¹³⁾

1) 신용철(신청인)

신경득의 아들인 신청인 신용철(1945년 生)은 그의 부친에 대해 기억이 없으며, 부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은 주로 모친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부친이 반탁과 관련되어 체포당한 시기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신청서의 내용도 강원일보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신청인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했던 김효진, 황익걸의 구(舊)소련문서 〈복권증(復權證)〉 들도 그 입수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신용철은 부친이 반탁운동과 관련하여 소련에 유형을 갔다는 사실에 관해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고, 함께 유형간 사람들의 구술증언을 간접증거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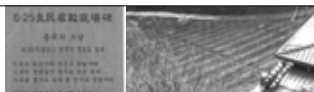
2) 김효진(사건당사자)

김효진은 신용철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사후에 신용철에게 통보 받았으며, 매년 12월 28일에 개최되는 반탁동지기념 행사에서 이철승 자유총연맹 총재를 통해서 신용철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신청인이 첨부한 19인의 이력은 김효진이 수감 당시에 들은 이야기를 위주로 작성한 것으로 19인 중 유형생활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은 같은 지역에서 체포된 황익걸, 황이각 뿐이며 나머지 16인은 평양감옥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김효진은 다른 여섯명의 수감자들과 해주감옥에서 한 달 가량 함께 있었으나, 그 중 네 명은 곧 석방되었고, 본인을 포함한 세 명(김효진, 황이각, 황익걸)은 주모자 격으로 분류되어 1946년 7월 경 평양감옥으로 이송되었다고 했다.

그가 평양감옥으로 이감되었을 당시, 출신 지역별로 각 도(道)의 사람들이 이미 수감되어 있었고,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로, 언제 어떻게 그들이 수감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서로 전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효진은 황익걸, 황이각과 함께 반탁운동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그들의 자세한 혐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했다. 신청인의 부친 신경득은 평양감옥에서 처음 만났으며, 1년 정도 함께 복역하였으나 김효진보다 10년 정도의 연장자로 간단한 안부 인사 이외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다고 했다.

13)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생존자(김효진, 황익걸) 면담; 황익걸의 舊소련 직업수첩(1957년); 신청인 면담.



그 후 1946년 12월 16일에 소련(블라디보스톡)으로 이송되어 6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거쳐서, 47년 여름 그 곳에서 재판을 받았고, 테러 미수인 경우 10~15년을, 자신을 비롯하여 반탁의 죄목으로 체포된 사람들은 제일 낮은 형인 5년형을 선고받았고, 친일부역혐의자는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그들은 형무소에서 형을 받은 후 각자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고, 김효진은 이르크츠크주에서 3년 반 동안 황이각, 양종엽, 현태묵과 같이 생활하였다고 한다. 김효진은 1951년 2월 형기 만료 후 강제노동에서 해방되어 같은 시기에 석방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1958년부터 카자흐스탄 잠불시에서 거주하였다고 한다.

진실규명대상자 19인 중 장희선과 조덕윤은 7년형을 선고받고 형이 만료된 1953년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고 한다.

구형사실을 확인해 주는 신청서에 첨부된 한글번역본은 김효진 본인이 직접 번역하였고, 복권증(1971년 발행)과 문서는 러시아에서 발급을 받았다고 한다. 1993년 국적 회복 신청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러시아에서 발급된 문서가 필요했으며, 현태묵은 그 증서를 분실하였기 때문에 국적회복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3) 황익걸(사건 당사자)

황익걸은 김효진과 같은 날짜인 1946년 1월 4일 체포되었으며, 그의 조카 황이각은 이보다 하루 늦은 1월 5일경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는 체포 당시 관에서 나온 조선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가던 중에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찾아갔으며, 도착 즉시 연행되어 재판 없이 곧바로 해주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1946년 7월 경, 해주감옥에서 황해도 타 지역에서 연행되어온 사람들과 넉 달 정도 함께 수감되어 있었으며, 1946년 10월 말 경 평양에서 반탁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온 최윤일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반탁운동 참여 죄목 외에 다른 죄목으로 체포되어 온 사람들도 있었고, 일본인 등 다른 국적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블라디보스톡에 약 8개월간 억류되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19명 모두 권석재판으로 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나. 김효진과 황익걸의 증언 비교 및 주요 쟁점

첫째, 1946년 1월, 황주에서 김효진과 황익걸은 동료 2명(강병철과 황보도인)과 함께 반탁운동을 결의하는 유인물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사거리에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들은 소련까지 이송되었다.

둘째, 진실규명대상자 19명 중 황주를 제외한 타 지역 사람들 16명은 모두 해주 혹은 평양감옥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며, 그들이 왜 소련으로 유배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



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서로 간단히 나눈 대화에서 다른 지역 사람들도 본인들과 비슷한 이유로 체포되지 않았는지를 추측하였다.

셋째, 진실규명신청인의 부친 신경득과는 거의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으며, 소련 유형을 마치고 북한으로 송환되었다는 장희선과 조덕윤에 대한 기억은 비교적 명확했다.

마지막으로 유배생활 후 소련의 관련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사면확인서신은 김효진만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황익걸은 그런 서신을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효진 역시 서신을 받은 시점이나 경위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했다.¹⁴⁾

다. 현지조사 결과¹⁵⁾

2차 철원 실지조사는 2006년 7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실시되었다. 조사기간 중에는 진실규명대상자 중 한 명인 장수덕의 조카 장성윤, 전(前) 강원일보 기자 조규병, 이정국과 면담을 실시하여 1993년 8월 13일에 강원일보에 실렸던 반탁운동관련 기사내용의 근거와 소련 유형생활과 관련한 장수덕의 행적에 대해 진술을 청취했다.

면담 결과 장성윤과 조규병은 신청인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소련 문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신청인 신용철과도 별 다른 친분이 없다고 했다. 또한 반탁운동에 대한 기사는 전적으로 철원지역의 향토사학가의 증언에 의존하여 작성되었다고 했다.¹⁶⁾

라. 그 외 사건관련 주변인물에 대한 진술조사

신용철 이외의 다른 유족들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¹⁷⁾ 면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수덕의 조카인 장성윤, 딸 장정순, 아들 장학량은 철원지역에서 장수덕 외 당시 두 부공장의 사장, 축산은행에 다녔던 사람, 자전거포집 주인 등이 반탁운동으로 연행되었으며, 평강 복계, 황해도에서 반탁운동이 일어난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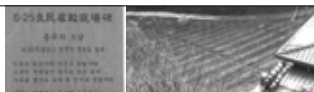
둘째, 현태목의 장남인 현효윤에 의하면, 누천에서 현태목, 조덕윤, 양종염이 반탁운동과 관련한 체포 경위 및 소련 유형 생활을 확인했다고 한다.

14) 서신이 발급된 날짜는 김효진이 대한민국으로 영주 귀국한 이후이며, 서신이 배달된 주소는 김효진이 귀국 전에 거주했던 카자흐스탄 잠볼시로 되어있다. 이 서신의 내용에 관해서는 조사보고서 뒷부분에 다시 논의하겠다.

15) 제2차 철원실지조사.

16) 이는 1차 실지조사 당시 본 조사관에게 ‘철원에서는 집회 수준의 반탁운동은 없었을 것’이라고 증언한 철원지역 향토사학가의 최초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만 향토사학가가 조규병과 인터뷰한 시점이 여러 해 전임을 감안한다면 그 사이에 그의 견해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17) 본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어 진술청취 조사를 한 참고인 명단 및 조사 일지는 다음과 같다. 장성윤(장수덕의 조카, 철원) 방문 면담: '06.7.20., 장정순(장수덕의 막내딸, 서울) 방문 면담: '06.8.3., '06.9.4., 현효윤(현태목의 장남, 군포) 방문 면담: '06.8.17., 장학량(장수덕의 장남, 시애틀) 전화 면담: '06.8.30., 김해영(김성길의 차남, LA) 전화 면담: '06.9.14., 김기영(김성길의 삼남, 시애틀) 방문 면담: '06.9.25., 김명숙(김성길의 장녀, 분당) 전화 면담: '06.10.10., 김병일(김성길의 부인, LA) 방문 면담: '06.10.26.



마지막으로 김성길의 자녀들인 김해영, 김기영, 김명숙은 당시 평강에서 김성길, 백병주가 반탁운동을 했으며, 그들의 소련 유형 생활에 대해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이들 이외에 해방 직후 철원에 거주했으나 현재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참고인들¹⁸⁾을 섭외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 그들은 반탁운동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으나, 1945년 말에서 1946년까지 철원 지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마. 소결

신문자료와 전문가 견해를 종합하면, 북한지역에서 발생했던 반탁운동은 시기상으로 1945년 12월 30일 이후일 것이며, 따라서 1945년 12월 16일 경에 철원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반탁운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해방 당시의 철원지역은 소련군 통치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현재의 철원지역과는 위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지조사를 통하여 해방 당시 시대적 상황의 사실 관계를 증명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본 사건은 5곳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일어난 일과 19명의 독립된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요하는 바, 단일한 결론을 내기 어려우며 지역별, 인물별로 그 결론의 차이가 불가피하다.

진실규명신청대상자들 19명(신경득, 송병남, 이의찬, 장수덕, 김상준, 전용일, 장희선, 김성길, 백병주, 김영호, 황익걸, 황이각, 김효진, 현대묵, 조덕윤, 양종염, 조상기, 최중갑, 최윤일) 중 1명(장희선)에 대해서만 북한 측 자료를 통해 반탁운동과 관련된 1차 사료 증거를 확보하였고, 6명(장수덕, 전용일, 김성길, 황익걸, 김효진, 현대묵)에 대해서는 구(舊)소련정부가 발행한 공문서를 통해 유형생활을 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그 공문서의 내용이 유형생활만을 증명할 뿐 유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죄명이 적시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 외에는 유형의 이유를 판단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 12명(신경득, 송병남, 이의찬, 김상준, 백병주, 김영호, 황이각, 조덕윤, 양종염, 조상기, 최중갑, 최윤일)에 대해서는 함께 유형간 사람들의 구술 증언 이외에는 반탁운동과 관련된 소련유형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18) 참고인들과의 면담 조사일자과 자세한 내용은 조사일지, 해방직후 철원에 거주했던 참고인 면담, 현대묵의 구소련 여권, 현대묵 체류허가서 및 김효진 공민증서, 현대묵의 소련국적 취득증명서 등 참고.



3. 신청인이 소련 유배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러시아 공문서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한 확인

가. 첨부서류에 대한 검증

신청인이 첨부한 구(舊)소련정부가 발행한 공문서가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를 통해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관에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도 동(同)건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06.8.1.~8.3.) 구체적인 문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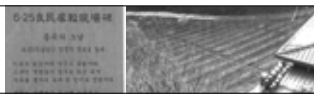
구(舊)소련 문서 3부(편의상 문서A, 문서B, 문서C로 지칭함)의 진위여부를 조회하였다. 문서A(〈별첨 1〉)는 황익걸에게 1971년 8월 18일 발행된 복권증(復權證)으로서 문서번호가 H-27/24-71이고, 문서B(〈별첨 2〉)는 김효진에게 1971년 8월 18일 발행된 복권증으로서 문서번호는 H-27/25-71이며, 문서C(〈별첨 3〉) 역시 김효진에게 1992년 1월23일 발행된 복권확인서(復權確認書)로 문서번호는 H-27/24-71이다.¹⁹⁾

동문서의 위변조여부를 확인해야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i) 문서C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는 김효진의 최초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 조사관이 직접 자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다.
- ii) 문서C의 이름(김효진)과 주소를 적은 부분이 문서의 다른 부분과 비교하여 타이프체가 아닌 사람이 수기한 필체(筆體)로 러시아어 능통자²⁰⁾에게 문의한 결과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필체라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 있었고, 주소와 이름 부분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 주위에 오려서 붙인 듯한 자국이 있는 등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 부분이 관찰되어 더욱 정밀한 확인이 필요했다.
- iii) 1992년에 김효진이 구(舊)소련정부로부터 받았다는 복권확인서(문서C)는 반탁운동이라는 죄명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복권사실만을 확인하는 복권증(문서A, B)에 비하여 그 중요도가 월등하다는 면에서 반드시 그 진위여부의 확인이 필요했다. 또한 황익걸에게 1971년 발행된 복권증의 문서번호(H-27/24-71)가 김효진에게 1992년 발급된 복권확인서(문서C)에도 부여되었다는 사실은 행정업무

19) 문서 A : 황익걸이 구(舊)소련정부로부터 발급 받았다는 복권증(復權證), 문서번호 “H-27/24-71”과 “황익걸”의 러시아어식 표기(〈별첨 1〉), 문서 B : 김효진이 구(舊)소련정부로부터 발급 받았다는 복권증(復權證), 문서번호 “H-27/25-71”과 “김효진”의 러시아어식 표기(〈별첨 2〉); 문서 C : 김효진이 구(舊)소련정부로부터 발급 받았다는 확인서의 사본(원본은 부제) 손으로 작성된 듯한 김효진의 구(舊)소련 거주지 주소(〈별첨 3〉); 역시 손으로 작성된 듯한 “김효진”의 러시아어식 표기; 본인의 문서번호가 아닌 “황익걸”의 문서번호와 일치하는 “H-27/24-71” 참조.

20) 2006년 7월 6일 조사관이 주한 러시아 공관을 방문했을 때 만난 문서담당자의 소견을 참고했다.



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해하기 어려웠다.

- iv) 김효진이 본인의 대한민국 영주 귀국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급되어 구(舊)소련지역의 예전 거주지로 배달된 복권확인서(문서C)를 어떠한 경로로 소지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의 필요성을 더했다.

러시아정부는 문서진위여부에 대한 확인협조사항에 관하여 문서A와 B는 적법하게 발급된 복권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으나 문서C(복권확인서)는 그 진위여부를 아직 확인중이라고 외교통상부를 통해 알려왔다. ('07.1.4.)

다만, 이와는 별도로 본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 중 복권증을 받은 인물들의 구체적인 죄명과 그 내용을 공문으로 확인 요청한 결과 그 중 한명인 현태묵이 위반한 당시 구(舊)소련 정부의 법률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구(舊)소련연방형법 58조 4항, 10항, 11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²¹⁾

전문가 자문 결과 형법58조의 경우 특히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해방 직후 친일부역자들도 같은 법률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았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위반조항만으로 그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²²⁾

나. 구(舊)소련지역의 거주자들과의 면담

현재 구소련지역의 거주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해방 직후, 반탁운동에 참여한 이유로 구(舊)소련지역으로 유형 온 사람들을 만나본 일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 주최 유공동포 초청 간담회²³⁾에 참석('06.7.5)하여 고려신문의 이정희 기자('06.8.18.)를 면담했고, 새 고려신문의 안춘대('06.9.4.)에게도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 관련사항을 문의했다. 그 외 구소련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일본인 사업가 스다 마사아끼(周田昌明)²⁴⁾와 면담을 진행했으며('06.8.19.), 그를 통해 자료협조를 요청하였으며('06.8.23.과 '06.9.18.), 그 결과 김성길(평강에서 반탁운동으로 체포 후 소련 유형) 관련 문서를 입수할 수 있었다.

다. 타 기관에 제출한 서류 확인 및 자료 발굴

신청인이 제출한 구소련 문서의 진실규명대상자들 중 생존자 일부가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도 확인하였다. (공문발송 : '06.7.25., '06.8.8., '06.8.14. 및 법무부 회

21) 현태묵이 위반한 법률조항을 적시하고 있는 러시아문서는 구(舊)소련연방형법 58조 4항, 10항, 11항의 내용(<별첨 4> 참조).

22) http://solovki.ca/gulag_solovki/20_01.php.

23) 자세한 면담내용은 '재외동포재단 주최 유공동포 초청 간담회' 참조.

24) 스다 마사아끼(周田昌明)는 평소에 재소 한인동포 문제에 관심이 많아 여러 차례 사비를 들여 구소련 지역을 방문하여 이들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신 : '06.8.24.)

또한 북한지역 반탁운동사실을 입증할 문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북한대학원 북한자료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중 해방 전후에 진실규명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문서들을 중심으로 일일이 확인하던 중, 평강중학교 교원 '최인환'의 자필이력서에서 진실규명 대상자 중 한 명인 '장희선'이 반탁운동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문구를 발견하는 기대치 못한 성과를 올렸다.('06.8.19.)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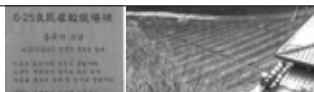
VI. 결론

1. 반탁운동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규명에 관하여는, 진실규명신청의 대상인 다섯 지역(철원, 평강, 황주, 누천, 연평) 중 두 지역(평강, 황주)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반탁시위 또는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문가 면담과 문헌 자료를 통하여 일부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세 지역(철원, 누천, 연평)에서는 반탁운동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2. 진실규명신청의 직접적 관련자들 19명이 반탁운동에 참여했는가의 여부와 반탁운동이 소련유형의 직접적 이유가 되었는지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는 진실규명신청대상자들 19명(신경득, 송병남, 이의찬, 장수덕, 김상준, 전용일, 장희선, 김성길, 백병주, 김영호, 황익걸, 황이각, 김효진, 현태묵, 조덕윤, 양종엽, 조상기, 최중갑, 최윤일) 중 1명(장희선)에 대해서만 북한측 자료를 통해 반탁운동과 관련된 1차 사료 증거를 확보하였고, 6명(장수덕, 전용일, 김성길, 황익걸, 김효진, 현태묵)에 대해서는 구(舊)소련정부가 발행한 공문서를 통해 유형생활을 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그 공문서의 내용이 유형생활만을 증명할 뿐 유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죄명이 적시되지 않아 본인의 주장 외에는 유형의 이유를 판단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 12명(신경득, 송병남, 이의찬, 김상준, 백병주, 김영호, 황이각, 조덕윤, 양종엽, 조상기, 최중갑, 최윤일)에 대해서는 함께 유형간 사람들의 구술 증언 이외에는 반탁운동과 관련된 소련유형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3. 전문가 자문과 문헌 기록 등 객관적 기록을 통해 해방 후 북한지역에서 일정규모의 반탁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과 이와 관련하여 소련으로 유형 보내진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중 장희선의 경우, 그의 반탁운동과 관련한 유형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더 이상의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 증거자료가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건 발생지가 북한지역에 해당하여 실지조사가 현실적

25) 최인환의 이력서에 등장하는 장희선의 반탁운동관련.(<별첨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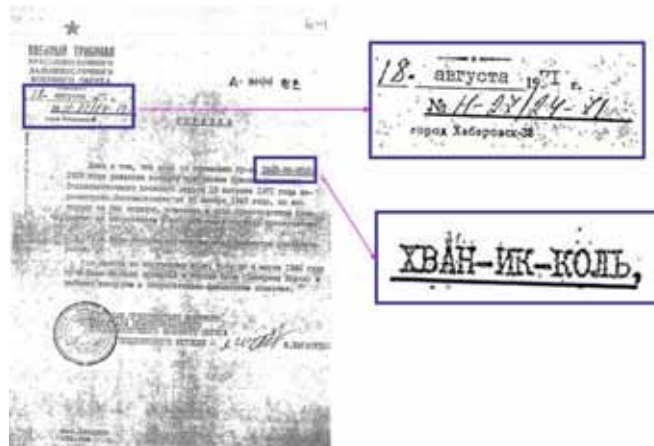


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본 사건과 관련된 거의 모든 진술을 고령의 생존자 2명(황익걸, 김효진)에게만 의존해야 하며, 그나마 생존자 2명도 다른 지역출신인 진실규명 대상자들과 유형 생활 이전에는 서로 친분관계가 없어 체포경위 등 그들의 구체적 반탁운동행적에 대해 진술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한다면, 추가조사를 통한 더 이상의 진실규명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사건은 일부(一部)진실규명으로 판단된다.



별첨 1

문서 A : 황익걸이 구(舊)소련정부로부터 발급 받았다는
복권증(復權證)문서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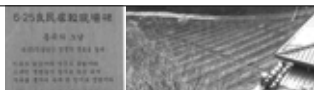
“H-27/24-71”(위 네모칸)과 “황익걸”의 러시아어식 표기(아래 네모칸)

별첨 2

문서 B : 김효진이 구(舊)소련정부로부터 발급 받았다는
복권증(復權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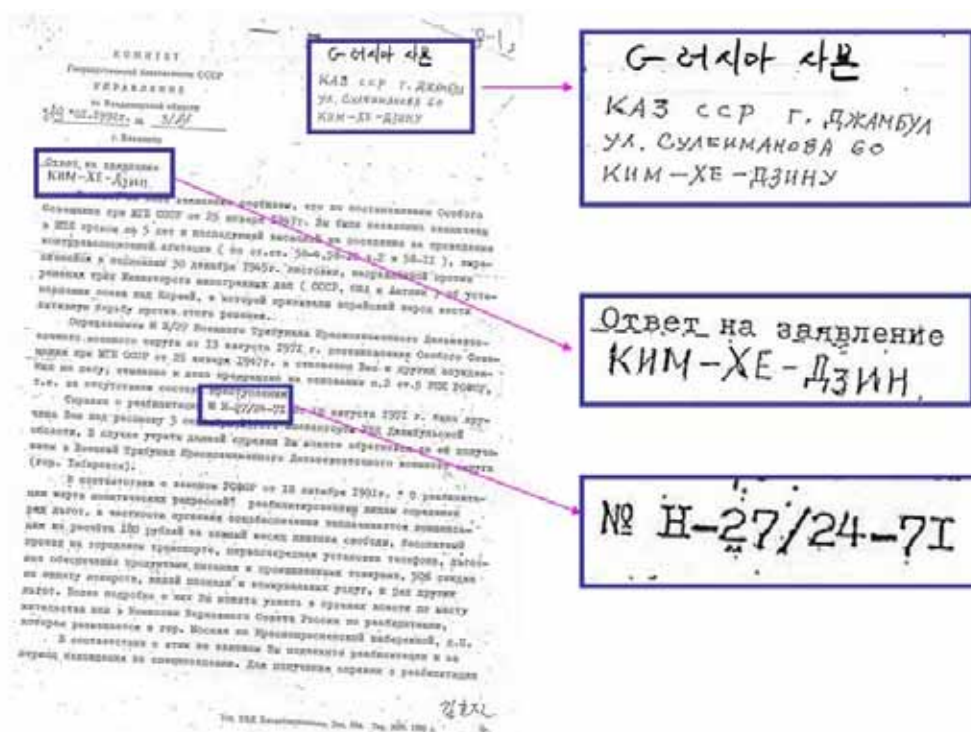


문서번호 “H-27/25-71”(위 네모칸)과 “김효진”의 러시아어식 표기(아래 네모칸)



◆ 별첨 3

문서 C : 김효진이 구(舊)소련정부로부터 발급 받았다는
확인서의 사본(원본은 부재)



손으로 작성된 듯 한 김효진의 구(舊)소련 거주시 주소(위의 네모칸)
역시 손으로 작성된 듯한 “김효진”의 러시아어식 표기 (중간의 네모칸) 본인의
문서번호가 아닌 “황익걸”의 문서번호와 일치하는 “H-27/24-71” (아래의 네모칸)



◆ 별첨 4

현태록이 위반한 법률조항을 적시하고 있는 러시아문서



◆ 별첨 5

최인환의 이력서에 등장하는 장희선의 반탁운동관련

